-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

| 의 안 번 호 | 779 |
|---|---|

2019년 9월 6일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7월 1일, 김상훈 의원 외 10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2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9년 8월 28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상훈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

○ 따라서,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

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조)

○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함(안 제5조)

○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음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도로교통법」제5조의3

○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5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　　간 : 2019. 7. 30. ~ 8. 6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) : 수정동의[1)]

-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 필요

1) 교통운영과.409(2019.8.2.)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○ 동 제정조례안은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서울시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**▌조례 제정 목적, 정의 관련(안 제1조~제2조)**

○ 안 제1조(목적)와 안 제2조(정의)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'교통안전 봉사단체' 및 '교통안전 봉사활동'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또한, 교통안전 봉사단체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성격을 구체화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**▌지원대상 관련(안 제3조)**

○ 안 제3조는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2,17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도시교통실 각 부서를 주관부서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총 56개 단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(붙임1 참조)

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방지하고, 그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**▌사업비 지원 및 사업비 지원 중단 관련(안 제4조)**

○ 안 제4조는 시장이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중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

○ 동 제정조례안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봉사활동을 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활동,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업무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

또한, 예산지원을 받은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서울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울시 및 서울시 이외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서

울시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보조금 지원 대상과 활동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**▌지도 및 감독 관련(안 제5조)**

○ 안 제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할 것임

교통안전 봉사단체 입장에서도 서울시로부터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임

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**▌표창, 준용 및 시행규칙 관련(안 제6조~안 제8조)**

○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시장이 봉사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, 동 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하며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며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

봉사단체로 하여금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서울시가 보조금 집행과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임

【붙임1】 도시교통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(2019.3.31. 현재)

| 구분 | 등록일 | 단체명 | 주된사업 | 주관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’08.03.18 | (사)전국 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서울본부 | •자전거 교통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운동 전개 | 자전거정책과 |
| 2 | ’08.01.22 | 생활체육 서울시 여성자전거 연합회 | •자전거무료강습 및 청소년선도,불우이웃돕기<br>•퀄트 및 수공예재료,알뜰장 | 자전거정책과 |
| 3 | ’07.12.26 | (사)사랑의 자전거 | •방치 자전거 재활용을 통한 자전거 나눔사업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| 자전거정책과 |
| 4 | ’05.12.15 | 서울특별시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| •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<br>•허가사항변경(차량대폐차)업무<br>•허가사항변경(상호,대표자)업무<br>•운수종사자교육 | 택시물류과 |
| 5 | ’05.04.21 | (사단법인)한국물류협회 | •물류실태에 관한 조사 · 연구,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한 선진물류기술의 연구·개발 | 택시물류과 |
| 6 | ’05.03.24 | 사단법인 도우회 | •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사업<br>•지하철재해 및 이례사태 발생시 지원사업<br>•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<br>•지하철사고 유자녀 복지사업 | 교통정책과 |
| 7 | ’00.05.10 |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| •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| 교통정책과 |
| 8 | ’03.02.03 | 한국교통시민협회 도봉지부 | •국가교통발전 및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도, 계몽, 홍보 등 | 교통정책과 |
| 9 | ’00.05.10 | 교통문화운동본부 서울본부 | •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| 교통정책과 |
| 10 | ’00.05.10 | 삼운회교통봉사대 서울시본부 | •교통사고로부터 재산과 생명지키기 | 교통운영과 |
| 11 | ’00.05.10 | 도시연대 시민교통 환경센터 | •대중교통증진 | 교통정책과 |
| 12 | ’00.05.10 | 새마을 교통봉사대 | •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| 교통운영과 |
| 13 | ’00.05.10 | 시민문화 발전모임 | •바로교통질서 확립 생활화 시민운동 | 교통정책과 |
| 14 | ’00.05.10 | 한국교통시민협회 서울시지회 | •교통사고피해 유가족, 장애인돕기<br>•교통질서확립 및 교통안전 시민의식 함양사업<br>•교통안전과 교통사고추방 및 교통량줄이기에 대한 대국민지도,계몽,홍보캠페인<br>•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긴급구조 및 병원후송<br>•장애인이동권증진 및 재활,복지사업<br>•각종생활 안전사고예방 및 피해복구,상담사업<br>•기타 본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| 교통운영과 |
| 15 | ’02.02.08 | 한국교통시민협회 관악지부 | •뺑소니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운동 | 교통운영과 |
| 16 | ’02.02.08 |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| •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, 안전운전 문화 캠페인을 통한 교통사고방지운동 등 | 교통운영과 |
| 17 | ’02.01.31 | 한국교통시민협회 서부지부 | •국가교통발전 및 시민교통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도,계몽, 홍보 등 | 교통정책과 |
| 18 | ’00.05.10 | 친절기사 교통봉사대 | •택시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| 교통정책과 |
| 19 | ’00.05.10 |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| •대중교통 제도개선 | 교통정책과 |
| 20 | ’00.05.10 | 시민의 교통권 연대 | •카플매칭 및 재매칭 사업, 안전띠매기 범국민운동추진, 교통기초질서 확립운동 등 | 교통정책과 |
| 21 | ’00.05.10 | 녹색어머니회 | •자동차 매연 추방 운동 | 교통정책과 |

| 구분 | 등록일 | 단체명 | 주된사업 | 주관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
| 22 | '01.05.29 | 한국교통시민협회 송파지부 | •뺑소니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운동 | 교통운영과 |
| 23 | '00.05.10 | 어린이교통안전협회 | •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| 교통운영과 |
| 24 | '00.05.10 | 녹색교통운동 | •도시,교통,환경관련조사연구<br>•교통사고피해가정 어린이돕기사업 | 교통정책과 |
| 25 | '01.03.31 | 시민교통안전협회 | •교통사고피해유자녀돕기<br>•교통안전켐페인<br>•교통감시단활동등 | 교통운영과 |
| 26 | '01.03.29 |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| •어린이교통안전행사 및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| 보행정책과 |
| 27 | '01.03.26 |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| •교통경찰보조업무수행 및 질서유지홍보활동<br>•교통사고예방관련행사 및 유인물제작배포<br>•교통사고유자녀돕기행사 | 교통운영과 |
| 28 | '01.03.09 | 교통안전실천단 | •교통안전교육, 질서지키기캠페인,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시민감시활동 등 | 교통운영과 |
| 29 | '01.02.21 | 환경표준협의회 서울지부 | •자동차문화창출, 생태환경, 대기환경, 에너지 절약 주체 양성, 국가공인연비.배출가스 표준마련 | 교통정책과 |
| 30 | '19.01.22 | (사)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| •교통사고줄이기 위한 교육,계몽,결연사업<br>•교통문화함양과 교통안전생활화추진사업<br>•교통사고장애인발생원인분석 및 예방홍보사업<br>•교통사고줄이기 시민전개사업<br>•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외 | 교통운영과 |
| 31 | '00.12.16 | 영등포모범운전자회 | •주차교차로 교통정리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| 교통운영과 |
| 32 | '18.08.22 | 교통안전문화연합회 | •교통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예방정책수립 및 조사연구<br>•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개선방안 모색<br>•그 외 교통안전문화 사업 | 교통운영과 |
| 33 | '00.07.05 | 도시교통시민연대 | •승용차자율요일제캠페인<br>•선진교통문화창달<br>•결식이웃무료급식사업 | 교통정책과 |
| 34 | '15.01.29 | 사단법인 대한교통안전협회 | •교통사고줄이기 범국민운동<br>•교통안전을 위한 조사,연구 및 제도화<br>•교통안전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,협력<br>•교통안전교재출간,보급 및 교육 | 교통운영과 |
| 35 | '14.06.02 | 교통장애인 송파지구 봉사대 | •교통사고줄이기 위한 교육,계몽,결연사업<br>•교통문화함양과 교통안전생활화 추진사업<br>•교통사고장애인발생원인분석 및 예방홍보사업<br>•교통사고줄이기 시민운동전개사업<br>•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<br>•사회의식개선과 활동을 위한 간행물발행사업<br>•각종피해구제상담 및 장애인재활사업등 | 교통운영과 |
| 36 | '14.02.11 |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문화교육협회 | •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교통안전문화기여사업<br>•교통문화선진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및 운수관련단체 및 산업종사자교육사업 등 | 교통운영과 |
| 37 | '14.02.11 | 사단법인 녹색교통장애인협회 | •교통문화교육사업,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연구조사,홍보사업등 | 교통운영과 |
| 38 | '14.02.04 | 전국대리기사협회 | •회원을위한권익실천사업<br>•효과적 인권익활동을 위한 타권익탄체와의 협력사업<br>•회원상호간의 상호부조 및 복지후생을 위한 상조사업<br>•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사교육 및 연수교육사업 | 교통정책과 |

| 구분 | 등록일 | 단체명 | 주된사업 | 주관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•기타 본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| |
| 39 | ’13.11.19 | (사)<br>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중앙회 | •교통사고장애인자립사업<br>•장애인부부무료합동결혼식사업<br>•사랑나눔장학사업 | 교통운영과 |
| 40 | ’13.11.19 | 전국<br>모범운전자연합회<br>서울지부 수서지회 | •거리질서확립<br>•교통질서확립<br>•환경캠페인<br>•방범순찰활동 | 교통정책과 |
| 41 | ’13.04.18 |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| •교통사고장애인자립을 위한 교육사업,교통사고줄이기 홍보사업 등 | 교통운영과 |
| 42 | ’13.02.20 | 한국교통장애인협회<br>서울지부 | •교통사고예방홍보 및 캠페인<br>•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| 교통운영과 |
| 43 | ’13.02.19 | 사단법인 희망레일 | •한반도 및 시베리아 인문학강좌<br>•시베리아횡단열차체험사업 | 교통정책과 |
| 44 | ’12.07.12 | 강동녹색자전거봉사단 | •자전거이용활성화운동<br>•자전거모니터링 및 정책제시<br>•자전거안전문화교육,홍보캠페인 등 | 자전거정책과 |
| 45 | ’12.03.02 | 한일역사교류회 | •한일 관계 역사 문화 관련 답사 및 민간 교류 | 교통정책과 |
| 46 | ’12.02.06 | 사단법인<br>택시친절센터 | •올바른 택시친절문화정착을 위한 연구사업<br>•택시불편해소를 위한 각종토론회 및 캠페인사업<br>•서울택시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토론회사업<br>•서울택시기사들에 대한 맞춤형CS교육사업<br>•택시기사의 건강과 가족복지향상을 위한 상담소운영<br>•택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홍보사업<br>•택시교통사고유자녀돕기사업<br>•기타설립목적에부합되는사업 | 택시물류과 |
| 47 | ’00.05.16 | 자전거타기운동연합<br>서울본부 | •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범국민 홍보, 자전거 안전교육등 | 자전거정책과 |
| 48 | ’11.09.14 | (사)한국자전거미캐닉협회 서울본부 | •자전거기술교육서비스<br>•대민봉사활동<br>•소비자보호활동 | 자전거정책과 |
| 49 | ’11.06.21 | 행복나눔 자전거연합 | •자전거생활화를위한교육<br>•자전거이벤트행사<br>•자전거봉사활동 | 자전거정책과 |
| 50 | ’11.03.10 | 송파녹색자전거봉사단 | •자전거이용활성화운동<br>•자전거모니터링및정책제시<br>•구민(청소년,주부)자전거교육,홍보,켐페인등 | 자전거정책과 |
| 51 | ’10.07.29 | 서울특별시<br>여성자전거연합회 | •자전거활성화에 따른 교육 및 대회, 홍보 | 자전거정책과 |
| 52 | ’00.05.15 | 작은사랑 시민교통봉사회 | •교통문화 향상과 복시사회구현 | 교통정책과 |
| 53 | ’00.05.15 |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 연합 | •교통, 환경, 복지, 교육, 정치개혁, 사법개혁 등 | 자전거정책과 |
| 54 | ’00.05.15 | (사)자전거21여성본부 | •자전거 생활운동 | 자전거정책과 |
| 55 | ’10.01.18 | 강남송파 자전거연합 | •자전거 생활화를 위한 교육, 무료수리, 기능사 양성 | 자전거정책과 |
| 56 | ’10.01.11 | 자전거 문화발전<br>연구소 | •자전거문화교육을통한시민의식개혁운동전개<br>•자전거 무료교실 운영 및 자전거 나눔 사업 | 자전거정책과 |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통안전 봉사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.
2. “교통안전 봉사활동”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(이하 “봉사활동”이라 한다)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,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(이하 “봉사단체”라 한다)에 한한다.

**제4조(사업비 지원 등)**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 학교의 등·하교 시간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
2.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
3.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
4.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,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
4.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표창)**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

(김상훈 의원 (대표) 발의)

| 의안 번호 | 779 |
|---|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1일
발 의 자 : 김상훈 의원 (1명)
찬 성 자 : 송도호, 김태호, 우형찬, 정진철, 이은주, 오중석, 송아량, 성중기, 추승우, 정지권 의원 (10명)

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

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조)

나.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함(안 제5조)

다.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음(안 제6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3

-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5조 및 제6조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　　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통안전 봉사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.
2. “교통안전 봉사활동”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(이하 “봉사활동”이라 한다)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,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(이하 “봉사단체”라 한다)에 한한다.

**제4조(사업비 지원 등)**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 학교의 등·하교 시간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
2. 어린이,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
3.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
4.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,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
4.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표창)**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활동(1호),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활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(2호)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○ 다만, 조례안 4조 1항 3호 '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'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로 별도 비용(수당)이 발생하나,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**<서울시 예산서(2019)>**

(단위 : 천원)

| 세부사업명 | 2018 | 2019 | 세부내역 |
|---|---|---|---|
|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| 3,550,000 | 3,253,840 | 모범운전자 수당 등 40,000천원 |

○ 조례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지원 대상), 제5조(지도 및 감독), 제6조(교육), 제7조(표창)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**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**

**나. 추계결과 ≒ 75,000천원(연평균 15,000천원)**

○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5,000천원으로 연평균 15,000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동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활동으로 보고 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비용을 산정함
- 2012년 실시한 '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' 비용 25,000천원에는

인건비(강사료, 회의수당 등), 홍보비, 사업진행비, 활동비(교통비,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)가 포함되어 있음

※ 전체사업비 중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자부담은 제외하고 비용추계함

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### ○ 총비용 ≒ 75,000천원(연평균 15,000천원)

- 산출방식 $\sum_{i=1}^{5}$(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)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3년)

**(단위 : 천원)**

| 구분 \ 연도 | |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세입 | -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-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조례안 제4조제1항 1호,2호 | 녹색어머니회 사업비 지원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75,000 |
| | 소계(b) |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75,000 |
| □총 비용(b-a) | |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15,000 | 75,000 |

### ○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 ≒ 75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{5}$(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)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 = 15,000천원

= 인건비 + 홍보비 + 사업진행비 + 활동비

= 4,340천원 + 3,337천원 + 6,123천원 + 1,200천원

※ 2012년 실시한 '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' 비용자료를 활용

○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| 예산과목 | 금액 | 산 출 내 역 |
|---|---|---|
| 계 | 15,000 | |
| 인 건 비<br>〈강사료, 회의참석수당, 단순인건비 등〉 | 4,340 | 회의참석수당<br>- 31명×35,000원×4회= 4,340,000원 |
| 홍 보 비<br>〈홍보물, 리플릿 제작 등〉 | 3,337 | 어깨띠 710개×4,700원=3,337,000원 |
| 사업진행비<br>〈교육장 임차료, 기자재 임차료, 행사진행비 등〉 | 6,123 | 안전깃발 512개×11,000원=5,632,000원<br>장갑 400개×990원=396,000원<br>인쇄비 4회×10,000=40,000원<br>잡비(복사비) 55,000원 |
| 활 동 비<br>〈시내교통비, 사무용품비, 재료비 등〉 | 1,200 | 행사참여 교통비 400명×3,000원<br>=1,200,000 |

4. 작성자
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남승우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분석관(주무관) 박종철
☏ 02-2180-7943
e-mail : pjc99@seoul.go.kr